

☐ 분뇨수집·운반업
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
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
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

☐ 휴업
☐ 폐업
☐ 재개업

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)		

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 :)
---------	-----------

허가(등록)업종	허가(등록)번호
----------	----------

☐ 휴업일 ☐ 폐업일 ☐ 재개업일	년 월 일	재개업 예정일 (휴업인 경우)	년 월 일
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☐ 휴업사유, ☐ 폐업사유 (구체적으로)	
---	--

「하수도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등록증(또는 허가증) 원본(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, 분실·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: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
2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

처리절차

